

울 산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6가단22805 면책 확인
원 고 A
피 고 B
변 론 종 결 2017. 3. 8.
판 결 선 고 2017. 4. 5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. 5. 13.자 양수금 부채 30,970,145원 및 30,573,402원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19371호로 30,573,402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, 2010. 10. 27. 피고 승소판결

(이하 '이 사건 판결'이라 한다)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은 2010. 11. 16. 확정되었다.

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5하단3663호, 2015하면366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. 1. 14. 파산선고를 받아 그 무렵 확정되고, 2016. 4. 8. 면책결정을 받아 2016. 4. 23. 확정되었다.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(이하 '이 사건 채무'라 한다)는 누락되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에서 4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과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피고의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면책확인을 구한다.

나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.

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,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·위험이 있고 그 불안·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(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 채무에 관한 원고의 이행의무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,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

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(대법원 2013. 9. 16. 자 2013마1438 결정 참조).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구하는 면책확인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되어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원고의 불안·위험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.

그렇다면 원고가 면책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관한 불안·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·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이 이익이 없다.

3. 결론

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.

판사 유재현